#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76

발의연월일: 2021. 3. 29.

발 의 자:서삼석・이학영・서영교

양정숙・송재호・박 정

홍정민 · 이해식 · 윤재갑

김주영 • 진성준 • 신정훈

김종민 · 박영순 · 허 영

김영배 · 이용빈 · 임종성

김성환 · 장경태 · 주철현

김영진 · 김원이 · 황운하

임호선 · 최종유 · 이워택

유준병 • 민형배 • 김철민

이규민 · 조오석 · 김승원

김민철 의원(3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(이하 "식량자급등"이 라 함)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,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18년까 지 총 4차례 자급목표가 설정되었음.

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식량자급등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9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007년 이래 가장 낮았으 며 식량자급률 또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.

식량자급등이 코로나19시대에 핵심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등 목표는 설정 기한이 장기일 뿐 아니라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음. 또한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대책이 없고, 새로운 자급목표 설정 시 기존 자급목표 및 추진계획에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식량자급등의 목표를 포함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하고, 식량자급등의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며, 농지면적 확보 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 및 17조제4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5년마다"를 "3년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"을 "자급목표, 그 추진계획(농지면적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),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"를 "사항을 3년마다 설정·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전체 식량자급률 및 품목별 식량자급률
- 2. 전체 곡물자급률 및 품목별 곡물자급률

제17조의 제목 중 "연차보고서"를 "연차보고서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기본계획이 종료된 이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	제14조(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
발전계획의 수립) ① 농업의	발전계획의 수립) ①
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	
형 있는 개발·보전 및 식품산	
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	
육성을 위하여 <u>5년마다</u> 농림축	<u>3년마다</u>
산식품부장관은 농업・농촌 및	
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	
한다.	
② 제1항에 따른 농업・농촌	②
및 식품산업 발전계획(이하	
"기본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	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	2
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	- <u>자급목표, 그 추진계획(농지</u>
	면적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),
	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
	에 관한 사항
2의2. ~ 6. (생 략)	2의2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	3
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	

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 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<u>사항</u> 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 의 지표로 활용한다.

- 률
- 2. 모든 곡물의 자급률
- 3. ~ 5. (생략)
- ④ ~ ⑦ (생 략)
- 제17조(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제17조(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에 관한 연차보고서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3년마다 설정·고시하고 이를 하고 고시하여 농업ㆍ농촌 및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

- 1.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 1. 전체 식량자급률 및 품목별 식량자급률
  - 2. 전체 곡물자급률 및 품목별 곡물자급률
  - 3. ~ 5. (현행과 같음)
  -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  - 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   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.